

국비유학 · 국비연수생 선발 · 파견 관리  
업무처리 지침

2025. 3. 31.

국립국제교육원

# 국비유학 · 국비연수생 선발 · 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

## 1 목 적

이 지침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선발·파견 관리, 세부적인 행정 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 범위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국비유학생 관련

### 1. 선발 · 파견

- 가. 국비유학생 선발 · 파견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의한다. [규정 제18조 제1항, 제20조]
- 나. 국비유학생의 선발 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공 분야별 · 파견 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18조 제2항]
- 다. 국비유학 기간은 3년 이내이고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 제19조 제1항]

## II. 장학금 지급기준

가. 국비유학생에 대한 파견 국가별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장학금은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내에서 체재비와 학비로 구분한다. [규정 제19조 제2항]

나. 과정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간은 석사 2년, 박사 3년, 연수 6개월 이내이며, 영국·캐나다·미국의 경우 일반전형은 2년,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은 석사 2년 및 박사과정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다. 장학금(체재비, 학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은 지급 기준국(미국)을 제외한 기타국가는 UN에서 발표한 UN 생계비 지수 등을 반영하여 정하되, 지급 기준국 금액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최저하한액 도입)
- 2) 체재비는 지급기준액(연간 최대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2만, 꿈나래 전형 USD 3만) 이내에서 재외근무수당 7급 공무원 지급기준액, 예산 등을 참고하여 국가별 최대 지급기준액을 산정한다.
- 3) 학비는 유학기관 납부 금액 증빙서류(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를 확인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내에서 인정항목·금액(수업료, 등록비, 보험료)을 검토·산정한다.

라. 장학금은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학기별(6개월 단위) 분할지급한다.

- 1) 국가별 차등 지급하며, 최대 지급기준액·기간 이내에서 실제 국비유학기간 등 상황을 고려해 개인별로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 2)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단위(주기)·범위·시기(유보 가능)·방법 등은 정부 예산 사정 및 환율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3) 체재비를 우선 지급(6개월 단위)한 후, 학비는 국가별 장학금 연간 지급기준액에서 체재비 연간 지급기준액을 차감하고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학기별(6개월 기준) 실비로 지급한다.

- 4)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기준 지급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지급하고, 당해 학기·연도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마. 장학금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
- 바. 장학금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비유학생의 유학생할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1 회차 장학금은 국비유학생이 관할 재외공관에 해당 유학국 도착 신고를 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국비유학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관할 재외공관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소요사태 등으로 국비유학생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은행수수료 발생 제외)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비유학생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후 국립국제교육원에 직접 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 사. 국비유학생이 국고 또는 장학재단 등에 의한 국내·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우리원과 타 장학재단 장학금 중 하나만 선택, 2024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해당자는 사안 발생 즉시 본원과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장학금 환수·국비유학생 자격 취소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국비유학 장학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학비는 확인된 유학기관 실제 납부 금액에 대해 지급금액 검토·결정)
- 1) 교육조교수당·연구조교수당·기타 연구(보조)원 수당 등 근로대가성 수당을 포함한 유학기관의 입학허가 조건으로 받는 재정 지원
  - 2) 수학 중 유학기관에서 받는 성적우수장학금을 포함한 포상 성격의 1회성 상금 등

- 아. 국비유학생이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한(이전 학기 성적이 60%미만)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필요시 국비유학생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자. 1 회차 장학금은 국비유학생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이후 회차부터는 관할 재외공관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신청서, 학사보고서, 등록 서류, 과거 한 학기 성적 증명서(1회차 장학금 신청지는 제외, 성적증명 발급이 되지 않는 일부 과정의 경우 지도 교수 또는 교육과정 담당자 레터 등), 유학기관 납부 금액(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증빙서류(등록금 고지서, 납부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재외공관장은 본원에 장학금을 요청하거나 학생에게 지급 시 이를 확인(전공분야 등 국비유학 확정 사항 일치 여부 포함)한 후 지급하도록 한다.
- 차. 마지막 회차 장학금 지급 시 장학금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1])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분은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 학위과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다만, 꿈나래 전형으로 선발된 국비유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카.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 합격자는 유학기관에 입학하기 전 외국 기관에서 어학연수(6개월 이내)를 할 수 있고, 총 유학기간은 이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다. 단, 국비유학 확정 신고 시 III. 마. 8)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별표 1]을 기준으로 어학연수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 타.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온라인 수학 시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1])을 50% 감액하여 우선 지급(6개월 내)한 후, 학비는 연간 최대지급액([별표1]) 기준 지급 가능 금액 내에서 유학기관 납부 금액을 확인·검토하여 학기별로 지급한다.

1) 국내 체류 온라인 수학 시 체재비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체재비 지급방법(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①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 1]) x 50% ÷ 12개월 x 국비유학기간 중 국내 체류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②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 1]) x 50% ÷ 12개월 ÷ 30일 x 국비유학기간 중 국내 체류 1개월 미만의 일수(출국일 제외)\*

\* 국내체류 온라인 수학기간: 입학일로부터 국내 체류 온라인 수학기간(방학기간 포함)

2) 국내 체류 온라인 수학을 하다가 유학국가로 중도 출국 시 출국일로부터 체재비 전액을 지급한다.

- 체재비 지급방법(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①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 1]) ÷ 12개월 x 국비유학기간 중 국외 체류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②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 1]) ÷ 12개월 ÷ 30일 x 국비유학기간 중 국외 체류 1개월 미만의 일수(출국일 포함)

### III. 선발전형 및 합격자 결정

가. 국비유학생의 선발전형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정책상 필요 전문인력 양성(일반전형)[규정 제20조 제3항]
- 2)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장애인등록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꿈나래 전형)[규정 제20조 제4항]
- 3) 우수 기술·기능인 인력양성(기술·기능인 전형)[규정 제20조 제5항]

나. 일반전형의 분야별 선발인원 및 꿈나래/기술·기능인전형 선발인원은 매년도 사업기본계획 작성 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며,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 미충원 시 일반전형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다.

다. 국비유학생 중 꿈나래/기술·기능인전형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규정 제20조 제6항]

라. 시험합격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규정 제24조 제2항]

- 1) 천재·지변, 전시·사변,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
  - 2) 법정 전염병 등으로 인해 출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출국이 어려운 경우
  - 3)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이하 “유학기관”이라 한다)의 경영 곤란 및 국비유학 확정 필수 서류 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학위취득 등 소기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출국기한에 임박하여 본인결혼, 부모사망 등 경조사로 인한 출국 지연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국비유학시험 꿈나래 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본인과 부양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익년도 9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국비유학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규정 제24조 제2항]

- 1) 유학기관의 입학허가서 1부(국문 번역 공증본 포함 제출)
- 2)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2부(1부는 본원, 1부는 공관 등 제출)
- 3) 서약서 1부(공증 후 제출)
- 4)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보증기간과 보증액 : 국비유학 전 기간과 장학금 지급총액

-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 주민등록등본 1부
- 7)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
-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부(해당자)
- 9)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 합격자 어학연수 증명서류 1부(해당자)

#### IV. 유학기관 선정

- 가. 국비유학 합격자의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 전공 분야), 학위과정에 대한 변경을 금지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극히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 나. 국비유학생은 직접 유학 대상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분야의 지도교수 부재 및 국비유학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한 유학 대상 기관 불합격에 따른 유학대상국·유학기관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입학허가서에는 전공분야와 학위과정이 표시되어야 하며, 막연히 대학원생이나 어학연수과정으로 명기되거나, 유사 분야의 입학허가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V. 출국항공료 지급

- 가. 항공료는 국비유학을 위한 출국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국비 유학생이 관할 재외공관에 유학국 도착 신고를 한 이후 국립국제교육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나. 항공료는 이코노미 기본석 기준금액으로 지급하며, 구매 후 카드 결제 영수증, 전자항공권여정안내서(E-Ticket),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다. 다른 지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직항노선을 기준으로 항공료를 지급 하되, 운항노선이 없거나 단순경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라. 귀국항공료는 2024년 이전 선발자까지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국비유학 후 자비유학 기간 중 매년 유학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2) 자비유학 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 3) 자비유학 기간을 포함하여 국비유학 종료 후 선발 당시 취득기로 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 4) 유학종료일(학위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

## VI. 학사관리 및 장학지도

- 가. 국비유학생은 국비유학 확정 승인을 받은 후 첫 회차 장학금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신청하며, 유학국에 도착 후 '국비유학생 기록카드'를 구비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반드시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나. 관할 재외공관은 국비유학생의 도착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도착 확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다. 국비유학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휴학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휴학한 경우의 휴학기간은 국비유학 기간에 포함된다.
- 라. 국비유학 기간 중의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기간 중에는 장학금 지급을 유예한다.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도 위 나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마. 국비유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전공 분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은 변경된 지역의 관할 재외공관으로 해당 유학생의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 바. 국비유학생이 국비유학기간 종료 후 자비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자비유학으로의 인정은 수학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1년 단위로 인정하며, 자비유학기간은 Post-Doc. 유학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7년까지로 한다.
- 사. 국비유학생이 국비유학을 종료하고 학위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하여 즉시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유학 종료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국비유학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1) 국비유학 결과보고서 1부
- 2) 유학체험 수기 1부
- 3) 학위증 사본 1부(비영어권인 경우에는 번역본 첨부)
- 4) 학위 논문 1부(국문요약서 A4용지 1~2매 별도 첨부)

아. 국비유학생은 관할 재외공관에 매년 학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 또는 자비 연장 신청 시 학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관할 재외공관은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관리하고, 국비유학생 수학 상황을 매년 1월말 까지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I.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 가.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중 소속대학 장의 추천으로 선발하는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매년도 『사업기본계획』 작성 시 정하여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규정 제34조 제3항]
- 나. 국비연수생 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비유학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 II. 연수경비 지급기준

- 가. 국비연수생에 대한 국가별 연수경비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장학금은 국가별 6개월 단위 최대 지급기준액 내에서 체재비와 학비로 구분한다. [규정 제35조 제3항]
- 나. 연수경비 및 출국항공료(1회, 이코노미 기본석 금액 기준)는 국비연수생이 관할 재외공관에 해당 연수국 도착 신고를 한 경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3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연수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국비유학생 개인계좌를 통해 직접송금 할 수 있다.

## III. 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규정 제36조]

- 가. 선발구분·인원·연수국가

구분	세부구분	전공분야	선발인원	연수기간	연수국가
국비연수	자격취득형 (정규교육기관)	응시자 희망 전공 분야	선발인원은 시험 실시 때마다 변동 될 수 있음	6개월 미만	희망 국가
	산업체연수형 (훈련연수기관)				

※ 단, 규정 제36조에 의거 총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선발시험 과목·방법·선발기준

구분	선발방법	평가항목	배점	합격자 선정 기준
1차 시험	서류 심사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40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3배수 선발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40	
		학업 성적	10	
		외국어 시험 성적	10	
		1차 시험 합계	100	
2차 시험	면접 시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50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0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	
		2차 시험 합계	100	

다.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과목 중 국사 시험성적은 제외하며, 학업성적 및 외국어시험 성적은 4할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II. 장학금 지급 기준'의 '가', '다. 2), 3)', '라. 3), 4)', '사', '아', '자', '타' 개정규정과 '3.-V. 출국항공료 지급'의 '가' 개정규정과 '4.-II. 연수경비 지급기준'의 '가', '나' 개정규정과 '4.-III. 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의 '나' 개정규정 및 [별표1, 2]의 변경된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 기준은 2025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별표2]의 변경된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액은 2024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별표2]의 변경된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액은 2023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장학금 지급 기준'의 '자 항목', [별표1]과 [별표2]의 변경된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액은 2022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별표2]의 변경된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액은 2021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장학금 지급 기준 - 나』의 개정규정은 2020년에 선발된 국비유학(연수)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장학금 지급기준 - 아』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국비유학생부터 적용하고, 『Ⅴ. 입·출국 항공료 지급 - 라 -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비유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및 효력) 규정과 규칙 및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별표 1 국비유학 국가별 장학금 지급 기준

① 국비유학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최대 지급기준액) (단위: USD)

국가	연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체재비	학비	장학금(총액)
미국	20,000	20,000	40,000
아르헨티나	20,000	9,520	29,520
호주	17,682	10,038	27,720
벨기에	20,000	8,440	28,440
브라질	20,000	5,920	25,920
불가리아	17,492	10,228	27,720
캐나다	18,077	10,003	28,080
칠레	20,000	4,840	24,840
중국	18,964	13,436	32,400
필리핀	20,000	8,800	28,800
체코	17,492	11,668	29,160
덴마크	20,000	14,560	34,560
이집트	20,000	6,280	26,280
핀란드	20,000	8,440	28,440
프랑스	20,000	9,880	29,880
독일	20,000	6,640	26,640
가나	20,000	9,520	29,520
헝가리	17,492	12,748	30,240
인도	20,000	8,440	28,440
인도네시아	20,000	7,360	27,360
이탈리아	20,000	4,840	24,840
일본	16,538	14,782	31,320
요르단	20,000	7,000	27,000
케냐	20,000	9,160	29,160
레바논	20,000	9,160	29,160
말레이시아	20,000	10,960	30,960
멕시코	20,000	9,520	29,520
몽골	20,000	8,440	28,440
네덜란드	20,000	8,440	28,440
뉴질랜드	20,000	13,840	33,840*
노르웨이	16,976	11,464	28,440
폴란드	17,492	10,588	28,080
카타르	20,000	10,960	30,960
루마니아	17,492	9,868	27,360
러시아	20,000	8,800	28,800
싱가포르	20,000	14,920	34,920
남아프리카공화국	20,000	5,920	25,920
스페인	19,819	5,741	25,560
스웨덴	17,752	9,608	27,360
스위스	20,000	15,640	35,640
태국	20,000	8,440	28,440
튀니지	19,250	7,390	26,640
터키	20,000	7,720	27,720
영국	20,000	14,920	34,920
베트남	20,000	7,360	27,360
오스트리아	20,000	9,520	29,520
이란	19,250	8,470	27,720
홍콩	20,000	20,000	40,000**
캄보디아	20,000	7,360	27,360

② 국비유학 **꿈나래 전형 장학금(최대 지급기준액)**

(단위 : USD)

국가	연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체재비	학비	장학금(총액)
미국	30,000	20,000	50,000
아르헨티나	30,000	6,900	36,900
호주	27,682	6,968	34,650
벨기에	30,000	5,550	35,550
브라질	30,000	2,400	32,400
불가리아	27,492	7,158	34,650
캐나다	28,077	7,023	35,100
칠레	30,000	1,050	31,050
중국	28,964	11,536	40,500
필리핀	30,000	6,000	36,000
체코	27,492	8,958	36,450
덴마크	30,000	13,200	43,200
이집트	30,000	2,850	32,850
핀란드	30,000	5,550	35,550
프랑스	30,000	7,350	37,350
독일	30,000	3,300	33,300
가나	30,000	6,900	36,900
헝가리	27,492	10,308	37,800
인도	30,000	5,550	35,550
인도네시아	30,000	4,200	34,200
이탈리아	30,000	1,050	31,050
일본	26,538	12,612	39,150
요르단	30,000	3,750	33,750
케냐	30,000	6,450	36,450
레바논	30,000	6,450	36,450
말레이시아	30,000	8,700	38,700
멕시코	30,000	6,900	36,900
몽골	30,000	5,550	35,550
네덜란드	30,000	5,550	35,550
뉴질랜드	30,000	12,300	42,300*
노르웨이	26,976	8,574	35,550
폴란드	27,492	7,608	35,100
카타르	30,000	8,700	38,700
루마니아	27,492	6,708	34,200
러시아	30,000	6,000	36,000
싱가포르	30,000	13,650	43,650
남아프리카공화국	30,000	2,400	32,400
스페인	29,819	2,131	31,950
스웨덴	27,752	6,448	34,200
스위스	30,000	14,550	44,550
태국	30,000	5,550	35,550
튀니지	29,250	4,050	33,300
터키	30,000	4,650	34,650
영국	30,000	13,650	43,650
베트남	30,000	4,200	34,200
오스트리아	30,000	6,900	36,900
이란	29,250	5,400	34,650
홍콩	30,000	20,000	50,000**
캄보디아	30,000	4,200	34,200

-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 홍콩은 당초 산출결과금액이 장학금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을 초과함에 따라 기준액으로 조정

**[국비유학 장학금 관련 세부 내용(1,2 공통)]**

- 1) 장학금 항목은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이내에서 체재비와 학비로 구분
- 2) 장학금 총액은 지급 기준국(미국) 외 기타국가의 경우, 지급기준액\*에 각국 UN지수(2024. 12월 기준)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산정
  - \* 장학금 미국 연간 최대지급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40,000, 꿈나래 전형 USD 50,000
- 3) 장학금 중 체재비는 지급기준액\*에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7급 기준 등을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산정
  - \* 체재비 미국 연간 최대지급액(상한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20,000, 꿈나래 전형 USD 30,000
- 4) 학비는 유학기관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
- 5)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 6) 최대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석사과정 2년 이내, 박사과정 3년 이내로 하여 지급
  - ※ 미국, 캐나다, 영국 : 일반전형 최대 2년 내 지원, 기술·기능인/꿈나래 전형은 석사 최대 2년 및 박사에 한하여 최대 3년 내 지원
- 7) 모든 '연간' 기준은 수혜 기준임(예시 : '25-1학기 재학, '25-2학기 휴학, '26-1학기 복학한 경우 '25-1학기'와 '26-1학기'를 '연간'으로 판단)
- 8) 장학금 지급은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학기별(6개월 단위) 분할지급. 체재비 우선 지원(학기별(6개월 단위)) 후, 국가별 연간 장학금 최대지급액에서 연간 체재비 최대지급액을 차감하고 남은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학비를 학기별 실비로 지급
  - 장학금(체재비, 학비) 실제 지급 시 지급기준액·기간 내에서 개별 유학(연수)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 (예) 학위를 당초 국비유학 확정기간보다 조기 취득한 경우 국비유학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지원. 만일 미지원 대상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선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 9) 학비는 유학기관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를 인정하며, 유학기관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납부 금액이 확인된 항목을 토대로 국립국제교육원의 검토 하에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증빙 제출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만큼 인정됨. 학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은 2개 학기분으로, 국비유학 시작학기부터 2개 학기를 1년으로 정하여, 국비유학생이 인정받은 학비금액 중 해당기간(연)별로 학비 연 기준액 초과분은 미지급하고, 당해기간(1년(2개 학기))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음
- 10)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 합격자가 유학기관 입학 전 외국기관에서 어학연수(6개월 이내) 시 어학연수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가능. 총 국비유학기간은 어학연수기간과 학위과정(석사 최대 2년, 박사 최대 3년 지원)을 합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
  - \* 지급액(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①체재비(●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12개월×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30일×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일수) + ②학비(연간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에서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 인정금액만큼 지급)
- 11) 국비유학생이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한(직전학기 성적이 60% 미만)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체재비 및 학비) 지급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장학금 미수혜 후 해당 국비유학생의 국비유학기간 총지급(최대)기준액 중 미수혜 학기분 장학금만큼 차감.
  - 체재비 및 학비 선지급(직전학기 성적 결과 제출 이전) 후 성적 기준 미달 등 장학금 미수혜 요건 해당사항 발생 시 장학금 지급기준 준용하여 해당 금액만큼(기지급된 장학금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조치 및 필요 시 국비유학생 자격 취소 가능

## 별표 2 국비연수 국가별 장학금 지급 기준

### □ 국비연수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6개월분)

(단위 : USD)

국가	6개월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체재비	학비	장학금(총액)
미국	10,000	10,000	20,000
아르헨티나	10,000	4,760	14,760
호주	8,841	5,019	13,860
벨기에	10,000	4,220	14,220
브라질	10,000	2,960	12,960
불가리아	8,746	5,114	13,860
캐나다	9,038	5,002	14,040
칠레	10,000	2,420	12,420
중국	9,482	6,718	16,200
필리핀	10,000	4,400	14,400
체코	8,746	5,834	14,580
덴마크	10,000	7,280	17,280
이집트	10,000	3,140	13,140
핀란드	10,000	4,220	14,220
프랑스	10,000	4,940	14,940
독일	10,000	3,320	13,320
가나	10,000	4,760	14,760
헝가리	8,746	6,374	15,120
인도	10,000	4,220	14,220
인도네시아	10,000	3,680	13,680
이탈리아	10,000	2,420	12,420
일본	8,269	7,391	15,660
요르단	10,000	3,500	13,500
케냐	10,000	4,580	14,580
레바논	10,000	4,580	14,580
말레이시아	10,000	5,480	15,480
멕시코	10,000	4,760	14,760
몽골	10,000	4,220	14,220
네덜란드	10,000	4,220	14,220
뉴질랜드	10,000	6,920	16,920*
노르웨이	8,488	5,732	14,220
폴란드	8,746	5,294	14,040
카타르	10,000	5,480	15,480
루마니아	8,746	4,934	13,680
러시아	10,000	4,400	14,400
싱가포르	10,000	7,460	17,460
남아프리카공화국	10,000	2,960	12,960
스페인	9,909	2,871	12,780
스웨덴	8,876	4,804	13,680
스위스	10,000	7,820	17,820
태국	10,000	4,220	14,220
튀니지	9,625	3,695	13,320
터키	10,000	3,860	13,860
영국	10,000	7,460	17,460
베트남	10,000	3,680	13,680
오스트리아	10,000	4,760	14,760
이란	9,625	4,235	13,860
홍콩	10,000	10,000	20,000**
캄보디아	10,000	3,680	13,680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홍콩은 당초 산출결과금액이 장학금 6개월 단위 최대 지급기준액을 초과함에 따라 기준액으로 조정

### [국비연수 장학금 세부 내용]

- 1) 장학금 항목은 국가별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 이내에서 체재비와 학비로 구분
- 2) 장학금 총액은 지급 기준국(미국)\* 외 기타국가의 경우, 지급기준액에 각국 UN지수(2024. 12월 기준)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을 산정한 후,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총액에 50%를 적용하여 산정  
\* 국비유학 장학금 미국 연간 최대지급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40,000, 꿈나래 전형 USD 50,000
- 3) 장학금 중 체재비는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에 50%를 적용하여 산정  
\* 체재비 지급 기준국(미국) 연간 최대지급액(상한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20,000, 꿈나래 전형 USD 30,000
- 4) 학비는 연수기관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학비 국가별 최대지급액(6개월분) 기준 지급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
- 5)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 6) 최대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수과정 6개월 이내로 하여 지급
- 7) 모든 '6개월 단위' 기준은 수혜 기준임(예시 : 연수기간 5개월로, '25-2학기 중 2개월 연수 및 중도 휴학, '26-1학기 복학 및 3개월 연수한 경우, '25-2학기'와 '26-1학기'를 합하여 '5개월'로 판단)
- 8) 장학금 지급은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한 학기(6개월 단위) 이내에서 지급. 체재비 우선 지원(6개월 이내) 후, 국가별 장학금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에서 체재비 6개월 단위 최대지급액을 차감하고 남은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학비(6개월 이내)를 실비로 지급  
- 장학금(체재비, 학비) 실제 지급 시 지급기준액·기간 내에서 개별 유학(연수)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예) 연수를 당초 국비연수 확정기간보다 조기 완료한 경우 국비연수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지원. 만일 미지원 대상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선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연수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 9) 학비는 연수기관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를 인정하며, 연수기관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납부 금액이 확인된 항목을 토대로 국립국제교육원의 검토 하에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증빙 제출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만큼 인정됨. 인정받은 학비금액 중 국가별 6개월 단위 최대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지원 가능 금액 초과분은 미지급하고, 당해기간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음
- 10) 국비연수생이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지급 대기 중인 차회분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장학금 미수혜 후 해당 국비연수생의 국비연수기간 최대 지급기준액 중 미수혜 기간의 장학금만큼 차감.  
체재비 및 학비 선지급 후 장학금 미수혜 요건 해당사항 발생 시 장학금 지급기준 준용하여 해당 금액만큼 (기지급된 장학금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및 필요 시 국비연수생 자격 취소 가능

### 별표 3 서식

- 국비유학생 장학금 지급신청서[서식 제1호]
- 학사보고서[서식 제2호]
- 국비유학생 기록카드[서식 제3호]
- 서약서[서식 제4호]
- 재정보증신청서[서식 제5호]
- 재정보증서[서식 제6호]
- 외화 송금 요청서[서식 제7호]
- 휴학 및 복학 승인 신청서[서식 제8호]
- 유학국가 등(POST-DOCTOR 포함) 변경 신청서[서식 제9호]
- (자비)유학기간 연장신청서[서식 제10호]
- POST-DOCTOR 허가신청서[서식 제11호]
- 국비유학 결과보고서[서식 제12호]
- 유학생 생활 체험수기[서식 제13호]
- 개인별 국비유학생 수학상황 보고서[서식 제14호]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의 효력 연장신청서[서식 제15호]
- 국비유학 사실증명신청서[서식 제16호]
- 국비유학 사실증명서(국문)[서식 제17-1호]
- 국비유학 사실증명서(영문)[서식 제17-2호]





[서식 제3호]

##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File No	*선발연도	*여권번호			생년월일			유학국(관할 공관)	응시번호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한 글		한 자			영 문							
주소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성별	남 · 여	결혼여부		
	E-mail				유학국 연락처							
병역	역종	군별	계급	군번			입대 년월일		제대 년월일			
							. . .		. . .			
최종 출신학교					전공학과				최종 학위			
합격증 발급일자					합격증 번호				합격 전공분야			
유학 대학교	(한글)				전공	(한글)			과정	(한글)	학교 소재지	
	(영문)					(영문)				(영문)		
친권자	성 명				주 소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원및 재보증인	성 명				주 소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원및 재보증인	성 명				주 소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출국일자	년 월 일				귀국 일자	년 월 일						
국비유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자비유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력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경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대학교                      학과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대학원                      학과						년 월 ~ 년 월	
※ 여권경사항								유학 대학 변경 사항		
									전공 분야 변경 사항	
	※ 장학 금지 급 관 계	연차 구분 (년)	항공료	금액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계		재외 주소 변경 사항
1										
2								비고		
3										
4										
5										
6										
유학대학			지도교수			취득학위				
발표 논문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또는 서명)	



[서식 제5호]

## 재 정보 증 신청서

1. 인적사항

- 성 명 : (영문 : )
- 생년월일 :
- 합격년도 및 분야 :
- 유 학 국 :

2. 장학금 지급액 및 기간

- 장학금 총지급액 : (연간 : )
- 장학금 지급기간 :

3. 발급 언어 : 국문, 영문 (해당하는 언어에 ○ 표시)

4.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재정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6-1호]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 재 정보 증 서

발행번호 : 202 -

202 . . .

관계관계

(생년월일: )은 202 년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서 선발된 국비유학 장학생임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출국항공료와 2년 동안 학비 USD & 체재비  
USD 을 지급할 것입니다.

동 학생의 장학금 및 기타 관련사항 문의가 있으시면 국립국제교육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서식 제6-2호]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 **Certificate of Financial Support**

**No. 202 -** \_\_\_\_\_

**DD.MM.YYYY**

To Whom It May Concern :

This is to certify that \_\_\_\_\_ is one of the grantees of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Study Overseas through a competitive selection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_\_\_\_.

In this regar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guarantee a departure airfare and tuition\_\_\_\_\_ & living expense\_\_\_\_\_ (per year) for the tenure of two years.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about the award,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Sincerely yours,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 외화송금요청서(반드시 영어로 작성)

(주                      대사 · 총영사)

■ 송 금 액:                      (        명)

■ 수 취 인 :

○ 주 소 :

■ 거래은행 :

○ 주 소 :

■ 계좌번호 : ( 필요 시, SWIFT CODE 또는 IBAN CODE 등도 반드시 표기)

※ 유럽지역은 아이반 코드 필수

■ 송금방법 : 전신환

상기와 같이 외화 송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립국제교육원 귀중





[서식 제9호]

(POST-DOCTOR 포함) 유학국가 · 대학 · 전공 및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File No.
성 명		유학대학	국비 : 자비 :
전공분야	국비 : 자비 :	변경분류	작성예) 국가, 대학, 전공, 학위과정 중 기재
변경내용	작성예) (당초) _____ (변경) _____	변경일자	
연 락 처	핸드폰 : E-Mail :		
유학기간	국 비	자 비	
		기 연 장 기 간	금 회 신 청 기 간
	년 월 ( 년) 년 월	년 월 ( 년) 년 월	년 월 ( 년) 년 월
변경사유	※ 상세히 기록		
위와 같이 유학대학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12호]

## 국비유학 결과보고서

1. 인적사항					File No.	
성명	유학대학	유학기간	전공분야	취득학위	학위 취득일	귀국일자
유학 상세	(국비) (자비)	(국비) (자비)	(국비) (자비)			
논문 제목						
향후 진로	1. 취업 확정/ 2. 취업 준비 / 3. 학업 지속 / 4. 기타 ※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 [1,2,3 외에 기타 기재]					
[상기 1의 취업 확정인 경우 가제 근무처(예정) 및 전화번호	직업구분 : 직책 :			직장명 : TEL :		
연락처	주소 : E-Mail :			TEL : 핸드폰 :		

### 2. 제출서류

- 가. 국비유학 결과보고서 1부
- 나. 학위증 사본 1부
- 다. 학위 논문 파일 1부
- 라. 학위 논문 국문요약서 A4용지(1~2매 별도 첨부) 1부
- 마. 유학체험 수기([서식 13] 활용)

위와 같이 국비유학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13호]

## 유학생 생활 체험수기

성명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이 작성할 것

1. 유학 준비 및 정착 과정
2. 현지 적응 과정 및 수학 중에 느낀 점
3. 학과공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경험 또는 뜻 깊었던 경험)
4. 학회 활동과 관련된 부분
5. 향후 계획

[서식 제14호]

## 개인별 국비유학생 수학상황 보고서

국가 및 관할 공관

작성일자 :       년       월       일

성명 (File No)	유학대학	전공	취득 학위	학위 취득 일시	국비유학 기간	기간 연장		유학 만료후 체재기간	비고
						국비: 자비:	POST DOC		
	국비: 자비:	국비: 자비:			부터 까지 (년)	부터 까지 (년)	부터 까지 (년)		

※ 자비유학 중 유학국, 대학(기관) 및 전공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세히 기술하며, 가로 작성 가능

[서식 제15호]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의 효력 연장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선발연도		선발분야	
당초 출국기한		연장 신청기한	

합격효력 연장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별지 첨부

위와 같은 사유로 국비유학 선발시험 합격 효력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_\_\_\_\_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17-1호]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 국비유학사실증명서

No. : 202 -

## 1.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2. 선발년도 :

## 3. 유학사항

- 유학국 :
- 유학대학 :
- 유학 학위 과정 :
- 전공 :
- 국비유학기간 :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2 . .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서식 제17-2호]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191,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57,*  
*Republic of Korea*

Tel : 82-2-3668-1375, Fax : 82-2-743-4992, <http://www.niied.go.kr>

## **Certificate of Global Korea Scholarship**

**No. 202 -**

### **1. Personal Information**

- Contact Address :
- Name of Student :
- Date of Birth :

### **2. Selected Year :**

### **3. Study Details**

- Country to Study :
- University :
- Program of Study :
- Major :
- Scholarship Period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mentioned has been selected as a GKS(Global Korea Scholarship) student.

, , 202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 참고 국비유학 · 연수 장학금 산출 근거자료

### 국비유학 연간 지역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및 최대 지급 기간 (단위 : USD)

지역	국가	연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최대 지급 기간	지역	국가	연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최대 지급 기간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꿈나래 전형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꿈나래 전형	
북미	미국	40,000	50,000	·(일반전형) 최대 2년 ·(기술·기능인 전형) 석사 최대 2년 ·(꿈나래 전형) 박사 최대 3년	유럽	네덜란드	28,440	35,550	3년
	캐나다	28,080	35,100			노르웨이	28,440	35,550	3년
아시아 등	뉴질랜드	33,840	42,300	3년		덴마크	34,560	43,200	3년
	필리핀	28,800	36,000	3년		독일	26,640	33,300	3년
	말레이시아	30,960	38,700	3년		러시아	28,800	36,000	3년
	몽골	28,440	35,550	3년		루마니아	27,360	34,200	3년
	베트남	27,360	34,200	3년		벨기에	28,440	35,550	3년
	싱가포르	34,920	43,650	3년		불가리아	27,720	34,650	3년
	인도	28,440	35,550	3년		스웨덴	27,360	34,200	3년
	인도네시아	27,360	34,200	3년		스위스	35,640	44,550	3년
	일본	31,320	39,150	3년		스페인	25,560	31,950	3년
	중국	32,400	40,500	3년		영국	34,920	43,650	·(일반전형) 최대 2년 ·(기술·기능인 전형) 석사 최대 2년 ·(꿈나래 전형) 박사 최대 3년
	태국	28,440	35,550	3년		이탈리아	24,840	31,050	3년
	터키	27,720	34,650	3년		체코	29,160	36,450	3년
	호주	27,720	34,650	3년		폴란드	28,080	35,100	3년
	홍콩	40,000	50,000	3년		프랑스	29,880	37,350	3년
	캄보디아	27,360	34,200	3년		핀란드	28,440	35,550	3년
	중동	레바논	29,160	36,450		3년	헝가리	30,240	37,800
요르단		27,000	33,750	3년		오스트리아	29,520	36,900	3년
카타르		30,960	38,700	3년					
이란		27,720	34,650	3년					
아프리카	가나	29,520	36,900	3년	중남미	멕시코	29,520	36,900	3년
	남아공	25,920	32,400	3년		브라질	25,920	32,400	3년
	이집트	26,280	32,850	3년		아르헨티나	29,520	36,900	3년
	케냐	29,160	36,450	3년		칠레	24,840	31,050	3년
	튀니지	26,640	33,300	3년					

- UN지수 반영(2024. 12월 기준)
-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 장학금 연간 단가 산정은 미국\*(지급 기준국)을 기준으로 산정  
\* 장학금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40,000, 꿈나래 전형 USD 50,000
- 유학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되, 석사과정은 최대 2년 및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 일반전형은 최대 2년 이내에서 지원하고,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은 석사과정 최대 2년 및 박사 과정에 한하여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 장학금(체재비, 학비) 실제 지급 시 지급기준액·기간 내에서 개별 유학(연수)인정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 할에 따라, 실지급액은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정산 및 환수 실시)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 장학금 지급은 실제 유학기간 등을 고려해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학기(6개월 기준) 단위로 국가별 차등 지급
-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생 어학연수기간(6개월 이내) 장학금 최대지급액(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 ①체재비(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12개월×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②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12개월×30일×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일수) + ③학비(학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내에서 유학기관 납부 금액을 확인·검토하여 학기별 실비 지급)
- 선발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별 장학금 지급단가를 유학기간 동안 고정하여 지급

□ **국비유학 연간 국가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및 최대 지급 기간** (단위 : USD)

지역	국가	연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최대 지급기간	지역	국가	연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최대 지급기간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꿈나래 전형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꿈나래 전형	
북 미	미국	20,000	30,000	·(일반전형) 최대 2년 ·(기술·기능인/ 꿈나래 전형) 석사 최대 2년 박사 최대 3년	유럽	네덜란드	20,000	30,000	3년
	캐나다	18,077	28,077			노르웨이	16,976	26,976	3년
아 시 아 등	뉴질랜드	20,000	30,000	3년		덴마크	20,000	30,000	3년
	필리핀	20,000	30,000	3년		독일	20,000	30,000	3년
	말레이시아	20,000	30,000	3년		러시아	20,000	30,000	3년
	몽골	20,000	30,000	3년		루마니아	17,492	27,492	3년
	베트남	20,000	30,000	3년		벨기에	20,000	30,000	3년
	싱가포르	20,000	30,000	3년		불가리아	17,492	27,492	3년
	인도	20,000	30,000	3년		스웨덴	17,752	27,752	3년
	인도네시아	20,000	30,000	3년		스위스	20,000	30,000	3년
	일본	16,538	26,538	3년		스페인	19,819	29,819	3년
	중국	18,964	28,964	3년		영국	20,000	30,000	·(일반전형) 최대 2년 ·(기술·기능인/ 꿈나래 전형) 석사 최대 2년 박사 최대 3년
	태국	20,000	30,000	3년		이탈리아	20,000	30,000	3년
	터키	20,000	30,000	3년		체코	17,492	27,492	3년
	호주	17,682	27,682	3년		폴란드	17,492	27,492	3년
	홍콩	20,000	30,000	3년		프랑스	20,000	30,000	3년
캄보디아	20,000	30,000	3년	핀란드		20,000	30,000	3년	
중 동	레바논	20,000	30,000	3년		헝가리	17,492	27,492	3년
	요르단	20,000	30,000	3년		오스트리아	20,000	30,000	3년
	카타르	20,000	30,000	3년		중 남 미	멕시코	20,000	30,000
	이란	19,250	29,250	3년	브라질		20,000	30,000	3년
가나	20,000	30,000	3년	아르헨티나	20,000		30,000	3년	
남아공	20,000	30,000	3년	칠레	20,000		30,000	3년	
이집트	20,000	30,000	3년						
아 프 리 카	케냐	20,000	30,000	3년					
	튀니지	19,250	29,250	3년					

-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82호, 2025.1.3.)」 제14조 및 [별표 11]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06호, 2023.1.3.)」 제39조 및 [별표 3] 등,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부령 제142호, 2024.12.30.)」 제4조 및 [별표 3] 기준 등 반영
-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 3) 유학기간 동안 체재비를 지급하되, 석사과정은 최대 2년 및 박사과정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 일반전형은 최대 2년 이내에서 지원하고,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은 석사과정 최대 2년 및 박사과정에 한하여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 체재비 우선 지급(6개월 단위)한 후, 학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기준 지급 가능 금액 내에서 학비를 학기별 실비로 지급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 4)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생 어학연수기간(6개월 이내) 체재비(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 ①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 12개월 x 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②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 12개월 x 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일수
- 5) 「국비유학·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에서 국비유학기간으로 국내에서의 수학기간을 승인받은 경우 국내 수학기간 동안에는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의 50% 금액을 계산할 단위 단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을 지급하며, 실제 기간에 따라 정산·가감 예정
- 6) 선발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별 체재비 지급 단가를 유학(연수) 기간 동안 고정하여 지급

## □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적용 UN 지수

※ 동 UN 지수(표)는 국비유학생과 국비연수생 동일하게 적용

(2024.12월 기준)

국가	대미 환율	통화	UN (생계비)지수
아르헨티나	1,016.590	Argentine peso	82.00
호주	1.572	Australian dollar	77.00
벨기에	0.953	Euro	79.00
브라질	6.035	Real	72.00
불가리아	1.863	Lev	77.00
캐나다	1.413	Canadian dollar	78.00
칠레	976.000	Chilean peso	69.00
중국	7.261	Yuan renminbi	90.00
필리핀	58.280	Philippine peso	80.00
체코	23.910	Czech koruna	81.00
덴마크	7.104	Danish krone	96.00
이집트	50.600	Egyptian pound	73.00
핀란드	0.953	Euro	79.00
프랑스	0.953	Euro	83.00
독일	0.953	Euro	74.00
가나	14.650	Cedi	82.00
헝가리	390.830	Forint	84.00
인도	84.840	Indian rupee	79.00
인도네시아	15,914.000	Rupiah	76.00
이탈리아	0.953	Euro	69.00
일본	152.300	Yen	87.00
요르단	0.708	Jordanian dinar	75.00
케냐	129.000	Kenyan shilling	81.00
레바논	89,500.000	Lebanese pound	81.00
말레이시아	4.430	Ringgit	86.00
멕시코	20.230	Mexican peso	82.00
몽골	3,417.210	Tugrik	79.00
네덜란드	0.953	Euro	79.00
뉴질랜드	1.729	New Zealand dollar	94.00*
노르웨이	11.146	Norwegian krone	79.00
폴란드	4.065	Zloty	78.00
카타르	3.645	Qatari rial	86.00
루마니아	4.730	Romanian leu	76.00
러시아	106.756	Russian ruble	80.00
싱가포르	1.343	Singapore dollar	97.00
남아프리카공화국	17.757	Rand	72.00
스페인	0.953	Euro	71.00
스웨덴	10.963	Swedish krona	76.00
스위스	0.884	Swiss franc	99.00
태국	33.820	Baht	79.00
튀니지	3.154	Tunisian dinar	74.00
터키	34.863	Turkish lira	77.00
영국	0.784	Pound sterling	97.00
베트남	25,359.000	Dong	76.00
오스트리아	0.953	Euro	82.00
이란	539,536.000	Iranian rial	77.00
홍콩	7.776	Hong kong dollar	121.00
캄보디아	4,023.000	Riel	76.00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국비유학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연간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UN 지수 반영 시 단가표  
(UN지수 : '24.12월 기준)

국가	2024년 단가 ※ 달러화 (USD)	UN지수 (A)	UN지수 적용 달러화 (B=4만 x A/100, USD)	변경단가 ※ UN지수 90% 적용 달러화 (C=B x 0.9, USD)	증감액 (D=C(변경단가) - 2024년 단가, USD)	비고
미국	40,000	100.00	40,000	40,000	-	지급기준액 USD 40,000
아르헨티나	24,480	82.00	32,800	29,520	5,040	
호주	28,440	77.00	30,800	27,720	-720	
벨기에	28,800	79.00	31,600	28,440	-360	
브라질	27,720	72.00	28,800	25,920	-1,800	
불가리아	28,080	77.00	30,800	27,720	-360	
캐나다	29,160	78.00	31,200	28,080	-1,080	
칠레	26,280	69.00	27,600	24,840	-1,440	
중국	32,760	90.00	36,000	32,400	-360	
필리핀	28,800	80.00	32,000	28,800	-	
체코	30,240	81.00	32,400	29,160	-1,080	
덴마크	35,280	96.00	38,400	34,560	-720	
이집트	27,720	73.00	29,200	26,280	-1,440	
핀란드	29,520	79.00	31,600	28,440	-1,080	
프랑스	30,600	83.00	33,200	29,880	-720	
독일	27,360	74.00	29,600	26,640	-720	
가나	27,720	82.00	32,800	29,520	1,800	
헝가리	30,600	84.00	33,600	30,240	-360	
인도	27,360	79.00	31,600	28,440	1,080	
인도네시아	27,720	76.00	30,400	27,360	-360	
이탈리아	25,560	69.00	27,600	24,840	-720	
일본	32,400	87.00	34,800	31,320	-1,080	
요르단	27,000	75.00	30,000	27,000	-	
케냐	25,920	81.00	32,400	29,160	3,240	
레바논	28,800	81.00	32,400	29,160	360	
말레이시아	29,520	86.00	34,400	30,960	1,440	
멕시코	31,680	82.00	32,800	29,520	-2,160	
몽골	28,440	79.00	31,600	28,440	-	
네덜란드	29,160	79.00	31,600	28,440	-720	
뉴질랜드	33,840	94.00*	37,600	33,840	-	
노르웨이	28,800	79.00	31,600	28,440	-360	
폴란드	28,080	78.00	31,200	28,080	-	
카타르	32,040	86.00	34,400	30,960	-1,080	
루마니아	27,000	76.00	30,400	27,360	360	
러시아	26,280	80.00	32,000	28,800	2,520	
싱가포르	34,560	97.00	38,800	34,920	360	
남아공	24,840	72.00	28,800	25,920	1,080	
스페인	25,920	71.00	28,400	25,560	-360	
스웨덴	28,440	76.00	30,400	27,360	-1,080	
스위스	36,360	99.00	39,600	35,640	-720	
태국	27,720	79.00	31,600	28,440	720	
튀니지	26,280	74.00	29,600	26,640	360	
터키	26,640	77.00	30,800	27,720	1,080	
영국	34,560	97.00	38,800	34,920	360	
베트남	27,000	76.00	30,400	27,360	360	
오스트리아	29,880	82.00	32,800	29,520	-360	
이란	27,000	77.00	30,800	27,720	720	
홍콩	40,000	121.00	48,400	40,000**	-	
캄보디아	28,440	76.00	30,400	27,360	-1,080	

1) 국비유학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단가 산정은 미국(지급 기준국) USD 40,000 기준으로 함  
 2) 2025년부터 국비유학 일반전형과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지급기준 일원화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홍콩 당초 산출금액(USD 43,560)이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USD 50,000을 초과함에 따라 지급기준액으로 조정

# □ 국비유학품나라 전형 연간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UN지수 반영 시 단가표

(UN지수 : '24.12월 기준)

국가	2024년 단가 ※ 달러화 (USD)	UN지수 (A)	UN지수 적용 달러화 (B=5만 x A/100, USD)	변경단가 ※ UN지수 90% 적용 달러화 (C=B x 0.9, USD)	증감액 (D=C(변경단가) - 2024년 단가, USD)	비고
미국	50,000	100.00	50,000	50,000	-	지급기준액 USD 50,000
아르헨티나	30,600	82.00	41,000	36,900	6,300	
호주	35,550	77.00	38,500	34,650	-900	
벨기에	36,000	79.00	39,500	35,550	-450	
브라질	34,650	72.00	36,000	32,400	-2,250	
불가리아	35,100	77.00	38,500	34,650	-450	
캐나다	36,450	78.00	39,000	35,100	-1,350	
칠레	32,850	69.00	34,500	31,050	-1,800	
중국	40,950	90.00	45,000	40,500	-450	
필리핀	36,000	80.00	40,000	36,000	-	
체코	37,800	81.00	40,500	36,450	-1,350	
덴마크	44,100	96.00	48,000	43,200	-900	
이집트	34,650	73.00	36,500	32,850	-1,800	
핀란드	36,900	79.00	39,500	35,550	-1,350	
프랑스	38,250	83.00	41,500	37,350	-900	
독일	34,200	74.00	37,000	33,300	-900	
가나	34,650	82.00	41,000	36,900	2,250	
헝가리	38,250	84.00	42,000	37,800	-450	
인도	34,200	79.00	39,500	35,550	1,350	
인도네시아	34,650	76.00	38,000	34,200	-450	
이탈리아	31,950	69.00	34,500	31,050	-900	
일본	40,500	87.00	43,500	39,150	-1,350	
요르단	33,750	75.00	37,500	33,750	-	
케냐	32,400	81.00	40,500	36,450	4,050	
레바논	36,000	81.00	40,500	36,450	450	
말레이시아	36,900	86.00	43,000	38,700	1,800	
멕시코	39,600	82.00	41,000	36,900	-2,700	
몽골	35,550	79.00	39,500	35,550	-	
네덜란드	36,450	79.00	39,500	35,550	-900	
뉴질랜드	42,300	94.00*	47,000	42,300	-	
노르웨이	36,000	79.00	39,500	35,550	-450	
폴란드	35,100	78.00	39,000	35,100	-	
카타르	40,050	86.00	43,000	38,700	-1,350	
루마니아	33,750	76.00	38,000	34,200	450	
러시아	32,850	80.00	40,000	36,000	3,150	
싱가포르	43,200	97.00	48,500	43,650	450	
남아공	31,050	72.00	36,000	32,400	1,350	
스페인	32,400	71.00	35,500	31,950	-450	
스웨덴	35,550	76.00	38,000	34,200	-1,350	
스위스	45,450	99.00	49,500	44,550	-900	
태국	34,650	79.00	39,500	35,550	900	
튀니지	32,850	74.00	37,000	33,300	450	
터키	33,300	77.00	38,500	34,650	1,350	
영국	43,200	97.00	48,500	43,650	450	
베트남	33,750	76.00	38,000	34,200	450	
오스트리아	37,350	82.00	41,000	36,900	-450	
이란	33,750	77.00	38,500	34,650	900	
홍콩	54,900	121.00	60,500	50,000**	-4,900	
캄보디아	35,550	76.00	38,000	34,200	-1,350	

1) 국비유학 품나라 전형 장학금 단가 산정은 미국(지급 기준국) USD 50,000 기준으로 함

2) 2025년부터 국비유학 일반전형과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지급기준 일원화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홍콩 당초 산출금액(USD 54,450)이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USD 50,000을 초과함에 따라 지급기준액으로 조정

# 국비유학(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연간 국가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단가표

(7급공무원 월지급기준액: '25. 1. 3. 기준)

국가	지역구분 (급지)	7급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월지급기준액				변경단가I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 (D=C x 90%, USD)	변경단가II (적용단가)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단가의 85%(체재기간 6개월~) (E=D x 85%, USD)	체재비 연간 지급 기준액 (F=E x 12개월, USD)	체재비 상한액 (G= USD 20,000, USD)	체재비 연간 실제 지급액 (H, USD)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내 월지급액(A)		미화 환산율 (B*)	미화환산율 적용 달러화 (C=AxB, USD)					
		금액	화폐 단위							
미국	현지화지급국	2,308	USD	1.0000	2,308.00	2,077.200	1,765.620	21,187	20,000	20,000
아르헨티나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20,691	20,000	20,000
호주	현지화지급국	3,105	AUD	0.62035	1,926.18	1,733.562	1,473.528	17,682	20,000	17,682
벨기에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브라질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22,454	20,000	20,000
불가리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17,492	20,000	17,492
캐나다	현지화지급국	2,837	CAD	0.69411	1,969.19	1,772.271	1,506.430	18,077	20,000	18,077
칠레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21,527	20,000	20,000
중국	현지화지급국	15,201	CNY	0.1359	2,065.81	1,859.229	1,580.345	18,964	20,000	18,964
필리핀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체코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17,492	20,000	17,492
덴마크	현지화지급국	17,473	DKK	0.13763	2,404.80	2,164.320	1,839.672	22,076	20,000	20,000
이집트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핀란드	현지화지급국	2,266	EURO	1.02665	2,326.38	2,093.742	1,779.681	21,356	20,000	20,000
프랑스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독일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가나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20,691	20,000	20,000
헝가리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17,492	20,000	17,492
인도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인도네시아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20,691	20,000	20,000
이탈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일본	현지화지급국	283,763	JPY	0.63488	1,801.55	1,621.395	1,378.186	16,538	20,000	16,538
요르단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22,454	20,000	20,000
케냐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21,527	20,000	20,000
레바논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22,454	20,000	20,000
말레이시아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20,691	20,000	20,000
멕시코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몽골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네덜란드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뉴질랜드	현지화지급국	4,111	NZD	0.55935	2,299.48	2,069.532	1,759.102	21,109	20,000	20,000
노르웨이	현지화지급국	21,055	NOK	0.08783	1,849.26	1,664.334	1,414.684	16,976	20,000	16,976
폴란드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17,492	20,000	17,492
카타르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22,454	20,000	20,000
루마니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17,492	20,000	17,492
러시아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21,527	20,000	20,000
싱가포르	현지화지급국	3,347	SGD	0.72987	2,442.87	2,198.583	1,868.796	22,425	20,000	20,000
남아공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스페인	현지화지급국	2,103	EURO	1.02665	2,159.04	1,943.136	1,651.666	19,819	20,000	19,819
스웨덴	현지화지급국	21,568	SEK	0.08966	1,933.78	1,740.402	1,479.342	17,752	20,000	17,752
스위스	현지화지급국	3,911	CHF	1.09595	4,286.26	3,857.634	3,278.989	39,347	20,000	20,000
태국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21,527	20,000	20,000
튀니지	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19,250	20,000	19,250
터키	현지화지급국	2,202	EURO	1.02665	2,260.68	2,034.612	1,729.420	20,753	20,000	20,000
영국	현지화지급국	1,948	GBP	1.23800	2,411.62	2,170.458	1,844.889	22,138	20,000	20,000
베트남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오스트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20,592	20,000	20,000
이란	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19,250	20,000	19,250
홍콩	사	2,638	USD	1.0000	2,638.00	2,374.200	2,018.070	24,216	20,000	20,000
캄보디아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20,269	20,000	20,000

\* 한국은행 발표 "미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일자('25.1.3.)의 환율 적용. 단, 중국위안은 한국은행에서  
미발표함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25.1.3.사 증가(최종)환율 적용

# □ 국비유학(꿈나래 전형) 연간 국가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단가표

(7급공무원 월지급기준액: '25. 1. 3. 기준)

국가	지역구분 (급지)	7급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월지급기준액				변경단가I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 (D=C x 90%, USD)	변경단가II (적용단가)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단가의 85%(체재기간 6개월~) (E=D x 85%, USD)	체재비 연간 지급 기준액 (F=F x 12개월+ 10,000** USD)	체재비 상한액 (G**= USD 30,000 USD)	체재비 연간 실제 지급액 (H, USD)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내 월지급액(A)		미화 환산율 (B*)	미화환산율 적용 달러화 (C=AxB, USD)					
		금액	환폐 단위							
미국	현지화지급국	2,308	USD	1.0000	2,308.00	2,077.200	1,765.620	31,187	30,000	30,000
아르헨티나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30,691	30,000	30,000
호주	현지화지급국	3,105	AUD	0.62035	1,926.18	1,733.562	1,473.528	27,682	30,000	27,682
벨기에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브라질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32,454	30,000	30,000
불가리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27,492	30,000	27,492
캐나다	현지화지급국	2,837	CAD	0.69411	1,969.19	1,772.271	1,506.430	28,077	30,000	28,077
칠레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31,527	30,000	30,000
중국	현지화지급국	15,201	CNY	0.1359	2,065.81	1,859.229	1,580.345	28,964	30,000	28,964
필리핀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체코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27,492	30,000	27,492
덴마크	현지화지급국	17,473	DKK	0.13763	2,404.80	2,164.320	1,839.672	32,076	30,000	30,000
이집트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핀란드	현지화지급국	2,266	EURO	1.02665	2,326.38	2,093.742	1,779.681	31,356	30,000	30,000
프랑스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독일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가나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30,691	30,000	30,000
헝가리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27,492	30,000	27,492
인도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인도네시아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30,691	30,000	30,000
이탈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일본	현지화지급국	283,763	JPY	0.63488	1,801.55	1,621.395	1,378.186	26,538	30,000	26,538
요르단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32,454	30,000	30,000
케냐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31,527	30,000	30,000
레바논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32,454	30,000	30,000
말레이시아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30,691	30,000	30,000
멕시코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몽골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네덜란드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뉴질랜드	현지화지급국	4,111	NZD	0.55935	2,299.48	2,069.532	1,759.102	31,109	30,000	30,000
노르웨이	현지화지급국	21,055	NOK	0.08783	1,849.26	1,664.334	1,414.684	26,976	30,000	26,976
폴란드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27,492	30,000	27,492
카타르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32,454	30,000	30,000
루마니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27,492	30,000	27,492
러시아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31,527	30,000	30,000
싱가포르	현지화지급국	3,347	SGD	0.72987	2,442.87	2,198.583	1,868.796	32,425	30,000	30,000
남아공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스페인	현지화지급국	2,103	EURO	1.02665	2,159.04	1,943.136	1,651.666	29,819	30,000	29,819
스웨덴	현지화지급국	21,568	SEK	0.08966	1,933.78	1,740.402	1,479.342	27,752	30,000	27,752
스위스	현지화지급국	3,911	CHF	1.09595	4,286.26	3,857.634	3,278.989	49,347	30,000	30,000
태국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31,527	30,000	30,000
튀니지	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29,250	30,000	29,250
터키	현지화지급국	2,202	EURO	1.02665	2,260.68	2,034.612	1,729.420	30,753	30,000	30,000
영국	현지화지급국	1,948	GBP	1.23800	2,411.62	2,170.458	1,844.889	32,138	30,000	30,000
베트남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오스트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30,592	30,000	30,000
이란	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29,250	30,000	29,250
홍콩	사	2,638	USD	1.0000	2,638.00	2,374.200	2,018.070	34,216	30,000	30,000
캄보디아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30,269	30,000	30,000

\* 한국은행 발표 "미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25.1.3.)의 환율 적용. 단, 중국외국은 한국은행에서  
 마발표함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25.1.3.사 증가(최종)환율 적용 \*\* 꿈나래 전형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일반/기술 기능인 전형 기준액에 USD 10,000

□ **국비연수 기술 기능인 전형 지역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및 최대 지급 기간(6개월분)**

(단위 : USD)

지역	국가	장학금 총액 (최대 지급기준액) (6개월분)	지역	국가	장학금 총액 (최대 지급기준액) (6개월분)
북미	미국	20,000	유럽	네덜란드	14,220
	캐나다	14,040		노르웨이	14,220
아시아 등	뉴질랜드	16,920		덴마크	17,280
	필리핀	14,400		독일	13,320
	말레이시아	15,480		러시아	14,400
	몽골	14,220		루마니아	13,680
	베트남	13,680		벨기에	14,220
	싱가포르	17,460		불가리아	13,860
	인도	14,220		스웨덴	13,680
	인도네시아	13,680		스위스	17,820
	일본	15,660		스페인	12,780
	중국	16,200		영국	17,460
	태국	14,220		이탈리아	12,420
	터키	13,860		체코	14,580
	호주	13,860		폴란드	14,040
	홍콩	20,000		프랑스	14,940
	캄보디아	13,680		핀란드	14,220
중동	레바논	14,580		헝가리	15,120
	요르단	13,500		오스트리아	14,760
	카타르	15,480			
	이란	13,860			
아프리카	가나	14,760	중남미	멕시코	14,760
	남아공	12,960		브라질	12,960
	이집트	13,140		아르헨티나	14,760
	케냐	14,580		칠레	12,420
	튀니지	13,320			

- UN지수 반영(2024. 12월 기준)
-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 장학금 산정은 미국(지급 기준국)을 기준으로 산출한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에 50% 적용하여 각국의 6개월 단위(만 6개월을 포함) 최대지급액을 산정
- 연수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되, 모든 연수과정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 장학금(체재비, 학비) 실제 지급 시 지급기준액·기간 내에서 개별 유학(연수)인정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실지급액은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연수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 장학금 지급은 실제 연수기간 등을 고려해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한 학기(6개월 기준) 단위로 국가별 차등 지급
- 선발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별 장학금 지급단가를 연수기간 동안 고정하여 지급

□ **국비연수 기술기능인 전형 국가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및 최대 지급 기간(6개월분)**  
 (단위 : USD)

지역	국가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6개월분)	지역	국가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6개월분)
북 미	미국	10,000	유럽	네덜란드	10,000
	캐나다	9,038		노르웨이	8,488
아 시 아  등	뉴질랜드	10,000		덴마크	10,000
	필리핀	10,000		독일	10,000
	말레이시아	10,000		러시아	10,000
	몽골	10,000		루마니아	8,746
	베트남	10,000		벨기에	10,000
	싱가포르	10,000		불가리아	8,746
	인도	10,000		스웨덴	8,876
	인도네시아	10,000		스위스	10,000
	일본	8,269		스페인	9,909
	중국	9,482		영국	10,000
	태국	10,000		이탈리아	10,000
	터키	10,000		체코	8,746
	호주	8,841		폴란드	8,746
	홍콩	10,000		프랑스	10,000
캄보디아	10,000	핀란드		10,000	
중 동	레바논	10,000		헝가리	8,746
	요르단	10,000		오스트리아	10,000
	카타르	10,000			
	이란	9,625			
아 프 리 카	가나	10,000	중 남 미	멕시코	10,000
	남아공	10,000		브라질	10,000
	이집트	10,000		아르헨티나	10,000
	케냐	10,000		칠레	10,000
	튀니지	9,625			

-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82호, 2025.1.3.)」 제14조 및 [별표 11]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06호, 2023.1.3.)」 제39조 및 [별표 3] 등,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부령 제142호, 2024.12.30.)」 제4조 및 [별표 3] 기준 등 반영
-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 3) 연수기간 동안 체재비를 지급하되,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체재비 우선 지급(6개월 이내)한 후, 학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기준 지급 가능 금액 내에서 학비를 학기별 실비로 지급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연수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 4)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에 50% 적용하여 6개월 단위(만 6개월을 포함)로 산정
- 5) 「국비유학·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에서 국비연수기간으로 국내에서의 수학기간을 승인받은 경우 국내 수학기간 동안에는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의 50% 금액을 계산(월 단위 단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을 지급하며, 실제 기간에 따라 정산·가감 예정
- 6) 선발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별 체재비 지급 단가를 유학(연수) 기간 동안 고정하여 지급

## □ 국비유학(연수)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적용 UN 지수

※ 동 UN 지수(표)는 국비유학생과 국비연수생 동일하게 적용

(2024.12월 기준)

국가	대미 환율	통화	UN (생계비)지수
아르헨티나	1,016.590	Argentine peso	82.00
호주	1.572	Australian dollar	77.00
벨기에	0.953	Euro	79.00
브라질	6.035	Real	72.00
불가리아	1.863	Lev	77.00
캐나다	1.413	Canadian dollar	78.00
칠레	976.000	Chilean peso	69.00
중국	7.261	Yuan renminbi	90.00
필리핀	58.280	Philippine peso	80.00
체코	23.910	Czech koruna	81.00
덴마크	7.104	Danish krone	96.00
이집트	50.600	Egyptian pound	73.00
핀란드	0.953	Euro	79.00
프랑스	0.953	Euro	83.00
독일	0.953	Euro	74.00
가나	14.650	Cedi	82.00
헝가리	390.830	Forint	84.00
인도	84.840	Indian rupee	79.00
인도네시아	15,914.000	Rupiah	76.00
이탈리아	0.953	Euro	69.00
일본	152.300	Yen	87.00
요르단	0.708	Jordanian dinar	75.00
케냐	129.000	Kenyan shilling	81.00
레바논	89,500.000	Lebanese pound	81.00
말레이시아	4.430	Ringgit	86.00
멕시코	20.230	Mexican peso	82.00
몽골	3,417.210	Tugrik	79.00
네덜란드	0.953	Euro	79.00
뉴질랜드	1.729	New Zealand dollar	94.00*
노르웨이	11.146	Norwegian krone	79.00
폴란드	4.065	Zloty	78.00
카타르	3.645	Qatari rial	86.00
루마니아	4.730	Romanian leu	76.00
러시아	106.756	Russian ruble	80.00
싱가포르	1.343	Singapore dollar	97.00
남아프리카공화국	17.757	Rand	72.00
스페인	0.953	Euro	71.00
스웨덴	10.963	Swedish krona	76.00
스위스	0.884	Swiss franc	99.00
태국	33.820	Baht	79.00
튀니지	3.154	Tunisian dinar	74.00
터키	34.863	Turkish lira	77.00
영국	0.784	Pound sterling	97.00
베트남	25,359.000	Dong	76.00
오스트리아	0.953	Euro	82.00
이란	539,536.000	Iranian rial	77.00
홍콩	7.776	Hong kong dollar	121.00
캄보디아	4,023.000	Riel	76.00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국비연수 기술·기능인 전형 국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6개월분) UN지수 반영 시 단표**  
(UN지수 : '24.12월 기준)

국가	2024년 단가 ※ 달러화 (USD)	UN지수 (A)	UN지수 적용 달러화* (B=2만 x A/ 100,USD)	변경단가 ※ UN지수 90% 적용 달러화 (C=B x 0.9,USD)	증감액 (D=C(변경단가) - 2024년 단가, USD)	비고
미국	25,000	100.00	20,000	20,000	-5,000	지급기준액 USD 20,000
아르헨티나	15,300	82.00	16,400	14,760	-540	
호주	17,775	77.00	15,400	13,860	-3,915	
벨기에	18,000	79.00	15,800	14,220	-3,780	
브라질	17,325	72.00	14,400	12,960	-4,365	
불가리아	17,550	77.00	15,400	13,860	-3,690	
캐나다	18,225	78.00	15,600	14,040	-4,185	
칠레	16,425	69.00	13,800	12,420	-4,005	
중국	20,475	90.00	18,000	16,200	-4,275	
필리핀	18,000	80.00	16,000	14,400	-3,600	
체코	18,900	81.00	16,200	14,580	-4,320	
덴마크	22,050	96.00	19,200	17,280	-4,770	
이집트	17,325	73.00	14,600	13,140	-4,185	
핀란드	18,450	79.00	15,800	14,220	-4,230	
프랑스	19,125	83.00	16,600	14,940	-4,185	
독일	17,100	74.00	14,800	13,320	-3,780	
가나	17,325	82.00	16,400	14,760	-2,565	
헝가리	19,125	84.00	16,800	15,120	-4,005	
인도	17,100	79.00	15,800	14,220	-2,880	
인도네시아	17,325	76.00	15,200	13,680	-3,645	
이탈리아	15,975	69.00	13,800	12,420	-3,555	
일본	20,250	87.00	17,400	15,660	-4,590	
요르단	16,875	75.00	15,000	13,500	-3,375	
케냐	16,200	81.00	16,200	14,580	-1,620	
레바논	18,000	81.00	16,200	14,580	-3,420	
말레이시아	18,450	86.00	17,200	15,480	-2,970	
멕시코	19,800	82.00	16,400	14,760	-5,040	
몽골	17,775	79.00	15,800	14,220	-3,555	
네덜란드	18,225	79.00	15,800	14,220	-4,005	
뉴질랜드	21,150	94.00*	18,800	16,920	-4,230	
노르웨이	18,000	79.00	15,800	14,220	-3,780	
폴란드	17,550	78.00	15,600	14,040	-3,510	
카타르	20,025	86.00	17,200	15,480	-4,545	
루마니아	16,875	76.00	15,200	13,680	-3,195	
러시아	16,425	80.00	16,000	14,400	-2,025	
싱가포르	21,600	97.00	19,400	17,460	-4,140	
남아공	15,525	72.00	14,400	12,960	-2,565	
스페인	16,200	71.00	14,200	12,780	-3,420	
스웨덴	17,775	76.00	15,200	13,680	-4,095	
스위스	22,725	99.00	19,800	17,820	-4,905	
태국	17,325	79.00	15,800	14,220	-3,105	
튀니지	16,425	74.00	14,800	13,320	-3,105	
터키	16,650	77.00	15,400	13,860	-2,790	
영국	21,600	97.00	19,400	17,460	-4,140	
베트남	16,875	76.00	15,200	13,680	-3,195	
오스트리아	18,675	82.00	16,400	14,760	-3,915	
이란	16,875	77.00	15,400	13,860	-3,015	
홍콩	27,450	121.00	24,200	20,000	-7,450	
캄보디아	17,775	76.00	15,200	13,680	-4,095	

1) 국비연수(기술·기능인) 장학금 단가 산정은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 지급기준액 및 미국(지급 기준국) USD 20,000 기준으로 함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홍콩 당초 산출금액(USD 21,780)이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 USD 20,000을 초과함에 따라 지급기준액으로 조정

# □ 국비연수 기술기능인 전형 국가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6개월분) 단가표

(7급공무원 월지급기준액: '25. 1. 3. 기준)

국가	지역구분 (급지)	7급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월지급기준액			변경단가I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 (D=C x 90%, USD)	변경단가II (적용단가) ※ 7급 공무원 월지급기준액 90% 적용단가의 85% 적용(6개월~) (E=D x 85%, USD)	체재비 6개월간 지급 기준액 (F**=E x 50%, USD)	체재비 6개월분 상한액 (G**= USD 10,000, USD)	체재비 6개월분 실제 지급액 (H, USD)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내 월지급액 (A)	미화 환산율 (B*)	미화환산율 적용 달러화 (C=AxB, USD)						
미국	현지화지급국	2,308	USD	1.0000	2,308.00	2,077.200	1,765.620	10,593	10,000	10,000
아르헨티나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10,345	10,000	10,000
호주	현지화지급국	3,105	AUD	0.62035	1,926.18	1,733.562	1,473.528	8,841	10,000	8,841
벨기에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브라질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11,227	10,000	10,000
불가리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8,746	10,000	8,746
캐나다	현지화지급국	2,837	CAD	0.69411	1,969.19	1,772.271	1,506.430	9,038	10,000	9,038
칠레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10,763	10,000	10,000
중국	현지화지급국	15,201	CNY	0.1359	2,065.81	1,859.229	1,580.345	9,482	10,000	9,482
필리핀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체코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8,746	10,000	8,746
덴마크	현지화지급국	17,473	DKK	0.13763	2,404.80	2,164.320	1,839.672	11,038	10,000	10,000
이집트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핀란드	현지화지급국	2,266	EURO	1.02665	2,326.38	2,093.742	1,779.681	10,678	10,000	10,000
프랑스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독일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가나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10,345	10,000	10,000
헝가리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8,746	10,000	8,746
인도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인도네시아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10,345	10,000	10,000
이탈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일본	현지화지급국	283,763	JPY	0.63488	1,801.55	1,621.395	1,378.186	8,269	10,000	8,269
요르단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11,227	10,000	10,000
케냐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10,763	10,000	10,000
레바논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11,227	10,000	10,000
말레이시아	다	2,254	USD	1.0000	2,254.00	2,028.600	1,724.310	10,345	10,000	10,000
멕시코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몽골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네덜란드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뉴질랜드	현지화지급국	4,111	NZD	0.55935	2,299.48	2,069.532	1,759.102	10,554	10,000	10,000
노르웨이	현지화지급국	21,055	NOK	0.08783	1,849.26	1,664.334	1,414.684	8,488	10,000	8,488
폴란드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8,746	10,000	8,746
카타르	마	2,446	USD	1.0000	2,446.00	2,201.400	1,871.190	11,227	10,000	10,000
루마니아	현지화지급국	1,856	EURO	1.02665	1,905.46	1,714.914	1,457.677	8,746	10,000	8,746
러시아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10,763	10,000	10,000
싱가포르	현지화지급국	3,347	SGD	0.72987	2,442.87	2,198.583	1,868.796	11,212	10,000	10,000
남아공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스페인	현지화지급국	2,103	EURO	1.02665	2,159.04	1,943.136	1,651.666	9,909	10,000	9,909
스웨덴	현지화지급국	21,568	SEK	0.08966	1,933.78	1,740.402	1,479.342	8,876	10,000	8,876
스위스	현지화지급국	3,911	CHF	1.09595	4,286.26	3,857.634	3,278.989	19,673	10,000	10,000
태국	라	2,345	USD	1.0000	2,345.00	2,110.500	1,793.925	10,763	10,000	10,000
튀니지	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9,625	10,000	9,625
터키	현지화지급국	2,202	EURO	1.02665	2,260.68	2,034.612	1,729.420	10,376	10,000	10,000
영국	현지화지급국	1,948	GBP	1.23800	2,411.62	2,170.458	1,844.889	11,069	10,000	10,000
베트남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오스트리아	현지화지급국	2,185	EURO	1.02665	2,243.23	2,018.907	1,716.071	10,296	10,000	10,000
이란	가	2,097	USD	1.0000	2,097.00	1,887.300	1,604.205	9,625	10,000	9,625
홍콩	사	2,638	USD	1.0000	2,638.00	2,374.200	2,018.070	12,108	10,000	10,000
캄보디아	나	2,208	USD	1.0000	2,208.00	1,987.200	1,689.120	10,134	10,000	10,000

\* 한국은행 발표 "미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25.1.3)의 환율 적용. 단, 중국위안은 한국은행에서 미발표함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25.1.3.자 증가(최종)환율 적용 \*\* 국비유학 기술기능인 전형 체재비 연간(12개월) 지급기준액의 50% 적용

<체재비 지급기준액 적용 주요 기준>

1. 관련 규정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35182호, 2025. 1. 3.)」

- ▶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기준 구분표(제14조 관련) <개정 2025. 1. 3.>

- ※ [구분] 4.재외직분야/ [수당명] 가.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달러 지급국과 현지화 지급국 각각 월지급액

나.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06호, 2023. 1. 3.)」

▶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①~② 생략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중략~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 계산**한다. ④ 생략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훈련비의 구체적인 환수 대상 및 기준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별표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개정 2014. 11. 19.>

- ※ [체재비] 국외훈련기간 6개월부터 85% 지급하고,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계산] 체재비의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예: 3.919 → 3.91)

다.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부령 제142호, 2024. 12. 30.)」

▶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3**과 같다.

▶ [별표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개정 2024. 9. 24.>

- ※ [지역구분] 가~차(예: “가” 지역의 대상지역으로는 이란, 튀니지 등)

2. 환율 : 한국은행(중국 이외 국가) 및 하나은행(중국) 발표 환율

가. 국가별 미화환산율(중국 제외) : 한국은행 발표 “2025.1.3.자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환율”\*

\* 체재비 산출 시 적용 법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 35182호)」 시행일과 동일한 일자(25. 1. 3.)에 대한 한국은행 발표 대미달러환율(증가)

\* 출처: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재부)」에 따라 정부예산 편성 시 한국은행 발표 환율 적용

나. 중국 미화환산율(대미달러환율) : 하나(외환)은행 발표 2025.1.3.자 증가(최종고시)환율

※ ‘중국 위안(CNY)’은 한국은행에서 미발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재부, 2024.) 일부발취]

□ 예산안 요구시 적용할 기준환율

○ 美 달러화 및 中 위안화 : '24.3.31일 증가환율

○ 여타 통화 : 한국은행(<http://ecos.bok.or.kr>)에서 발표하는 美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 적용('24.3.31일 증가)